선박검사 관련 문의

본부 및 지부명	전 화 번 호	FAX 번호
본 부	032)260-2241	032)260-2245
부산지부	051)638-6221~5	051)638-6226
인천지부	032)764-6181~3	032)764-6184
강원지부	033)535-8091~3	033)535-8094
보령지부	041)933-3981,5863	041)932-1855
태안지부	041)674-5447~8	041)674-5449
군산지부	063)452-8187~8	063)452-8189
목포지부	061)245-6142~4	061)245-6145
여수지부	061)654-5262~4	061)654-5265
고흥지부	061)843-5394 061)844-5394	061)844-1369
완도지부	061)554-1474,1480	061)554-0069
포항지부	054)246-5394~5	054)246-5396
마산지부	055)222-6774 055)246-6774	055)246-7838
통영지부	055)645-6011 055)646-6011,6031	055)644-8661
사천지부	055)833-5394,4998	055)832-1484
제주지부	064)721-7401~2	064)702-7404
속초출장소	033)635-5394~5	033)631-6002

선박안전기술공단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406-13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50 송도 테크노파크 갯벌타워 www.kst.or.kr

선박검사와 등록은 이렇게 합니다

2011. 6



선박안전기술공단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목 차

CONTENTS

Ⅰ. 선박등록 안내 1

1. 선박 등록(선박법) 2

2. 어선 등록(어선법) 5

3. 수상레저기구 등록(수상레저안전법) 7

Ⅱ. 선박검사 안내 9

1. 선박 검사(선박안전법) 10

2. 어선 검사(어선법) 13

3.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수상레저안전법) 16



Ⅰ. 선박등록 안내

구 분	등록대상	등록기관	관련법
선박 	• 대한민국 선박 ※ 어선 및 수상레저기구를 제외한 선박	지방해양항만청 (선적항)	선박법
어선 	• 어 선	시·군·구청 (선적항)	어선법
수상레저기구 	• 수상오토바이 • 총톤수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 고무보트(30마력 이상)	시·군·구청 (소유자 주소지)	수상레저안전법

1. 선박 등록(선박법)

가. 선박법에 따라 등록해야 할 대상은 어떤 선박들이 있나요?

대한민국 모든 선박은 선박법에 따라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선박법 제8조)

적용제외선박(선박법 제26조)

- ▷ 군함 및 경찰용 선박
- ▷ 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 ▷ 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선
- ▷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다만,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등록 대상임
- ▷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 ▷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
-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 및 고무보트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 및 범선과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은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선박등기법 제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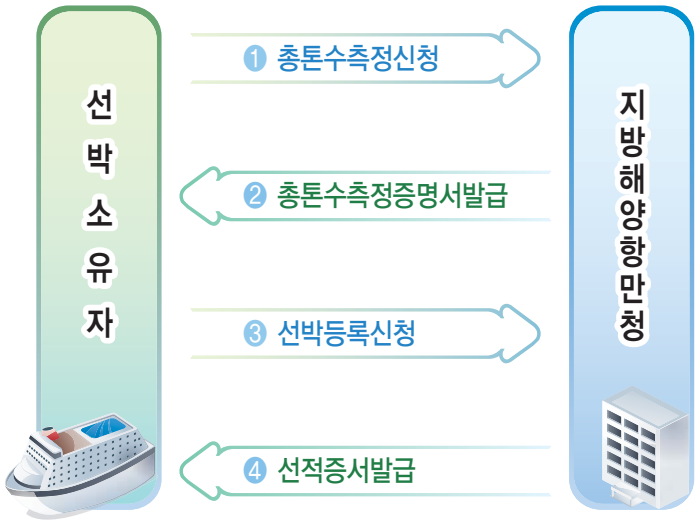
나. 선박을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박법 시행규칙 제10조 참조)

- **등록기관** :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
- **구비서류**
  - 선박등록신청서
  - 선박등기부 등본(등기 대상선박에 한정함)

※ 총톤수측정증명서 및 그 밖의 설계도서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되었으므로 중복제출 불필요

- **등록 절차도**



선박의 톤수 측정시 소유자가 제출하는 서류

(선박법 제7조 및 선박법 시행규칙 제3조)

①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측정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선박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외국정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기관으로부터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선박의 경우는 제외함)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총톤수계산서(총톤수의 부분측정을 받은 선박으로 한정함)
7. 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서
   (총톤수의 계산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함)

②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

1. 선외기를 탑재한 선박 : 제출서류 없음
2. 측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기선(선외기를 탑재한 선박은 제외)과 범선 : 일반배치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선박 : 일반배치도, 선체선도(「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외국정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기관으로부터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선박의 경우는 제외함) 및 중앙횡단면도

2. 어선 등록(어선법)

가. 어선법에 따라 등록해야 할 대상은 어떤 어선입니까?

어선과 다음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선법에 따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어선법 제13조 및 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

-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선박
- 「선박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선박
-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은 등기를 한 후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어선법 제13조 및 선박등기법 제2조)

어선의 정의(어선법 제2조)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1.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 (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2.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3. 어선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4. 어선으로 등록을 한 선박

나. 어선을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 참조)

○ 등록기관 :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 · 군 · 구청

※ 어선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허가 또는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수산업법 참조)

○ 구비서류

-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이상인 경우)
-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

○ 등록 절차도



어선의 총톤수 측정 (어선법 시행규칙 제12조)

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개측을 받으려는 자는 어선총톤수측정·개측신청서를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대한민국 영사(외국에서의 경우)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측정 길이 24미터 이상 어선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도면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배치도 및 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총톤수계산서(총톤수 부분측정을 받은 어선만 해당)

3. 수상레저기구 등록(수상레저안전법)

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수상에서 취미 · 오락 · 체육 · 교육 등을 목적으로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다음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

- 수상오토바이
- 모터보트(총톤수 20톤 미만)
  - ※ 2011년 10월 4일까지는 20마력 이상 모터보트(선외기만 해당)만 안전검사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 ※ 총톤수 20톤 이상 모터보트는 선박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고무보트(추진기관 30마력 이상)
  - ※ 추진기관 30마력 미만 고무보트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도선업을 영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등록 및 선박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상레저기구로 사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 등록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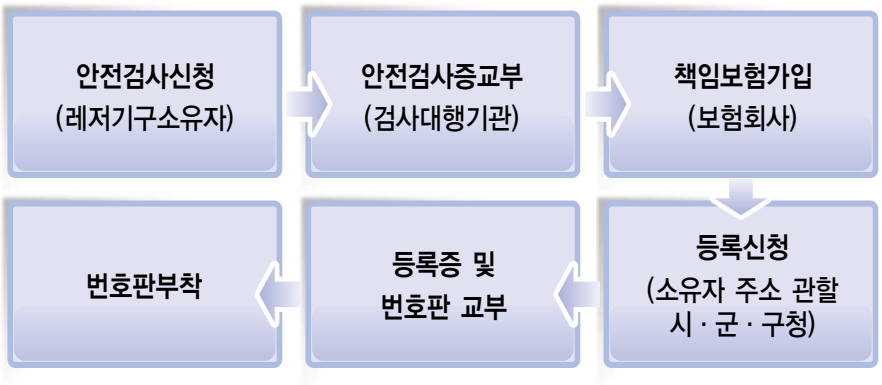
나. 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 참조)

- **접수기관** :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 **구비서류**
  - 안전검사증(사본)
  -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또는 그 밖의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경, 좌측면, 우측면 및 후면 각 1매)
  - 보험가입증명서(사본)
  -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증명서류

- **등록 절차도**





Ⅱ. 선박검사 안내

구 분	검사대상	관할기관
선박안전법	•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 • 적용제외선박 : 군함 및 경찰용 선박,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등	국토해양부 (검사대행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어선법	• 대한민국 국민 또는 정부가 소유한 모든어선 ※ 검사면제어선 :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으로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어선 등	농림수산식품부 (검사대행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수상레저안전법	• 수상오토바이 • 모터보트(총톤수 20톤 미만) • 고무보트(30마력 이상)	해양경찰청 (안전검사 대행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1. 선박 검사(선박안전법)

가. 선박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어떤 선박입니까?

대상선박 :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모든 선박 (선박안전법 제3조)

- **수상레저기구 중 모터보트(20톤 이상), 요트, 호버크레프트**
-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동식 시추선, 13인 이상 수상호텔, 수상식당, 수상공연장 등)**
- **외국선박 중 국내 내항운항사업 여객선 및 화물선**
-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

적용제외선박(선박안전법 제3조 및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

- ▷ 군함 및 경찰용 선박
- ▷ 노와 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
- ▷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 ▷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하고 계선계를 제출한 선박
- ▷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
- ▷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 →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않은 선박으로서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다만, 여객선, 기름 또는 폐기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위험물 운송선박, 압항부선 및 잠수선 등의 특수선박은 검사대상임)
  - →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선박
  -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 ·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2007년 11월 4일 이전에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은 선박

나. 선박의 검사종류별 검사 시기 및 신청기관은?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1조)

구 분	검사 시기	신청 기관
건조(별도건조) 검사	○ 선박을 건조하고자 할 때 ○ 외국에서 수입 등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자 할 때	검사대행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정기검사	○ 선박이 건조된 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할 때 ○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5년)이 만료된 때	
중간검사	○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사이 ※ 총톤수 2톤 미만 선박은 면제	
임시검사	○ 선박의 시설을 개조·수리할 때 ○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할 때	
임시항해검사	○ 선박검사증서를 받기 전에 선박을 임시로 항해에 사용하고자 할 때	

다. 선박검사 신청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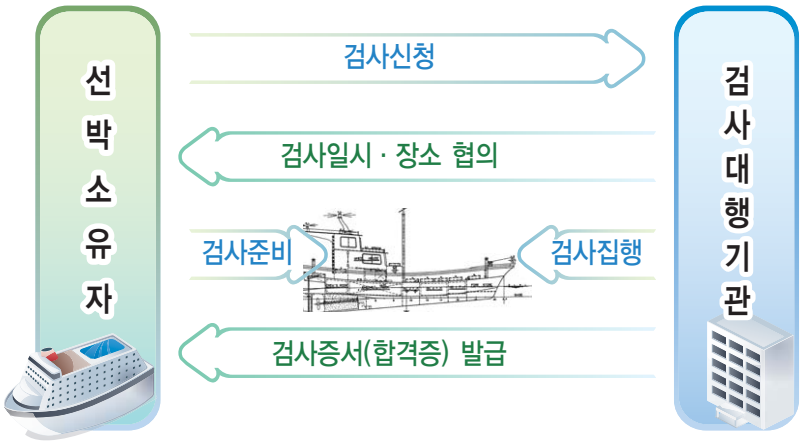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22조 참조)

- **검사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선급

- **구비서류**
  - 선박검사신청서
  -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선박수입으로 임시항해검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임시선박국적증서)
  - 선박검사증서(최초의 정기검사 시는 제외)
  - 도면 등 해당 선박검사에 관한 서류

- **신청방법**

  방문,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2.어선 검사(어선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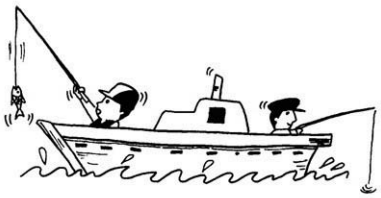
가. 어선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어떤 어선입니까?

모든 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검사대행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선급)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선법 제21조)

적용제외선박(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

- ▷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 ▷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으로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어선
- ▷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그 증서를 대행검사기관에 반납한 후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나. 어선의 검사종류별 검사시기 및 신청기관은?

(어선법 제21조)

구 분	검사 시기	신청 기관
건조(별도건조) 검사	○ 어선을 건조하고자 할 때 ○ 외국에서 수입 등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항행에 사용하고자 할 때	검사대행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정기검사	○ 어선이 건조된 후 최초로 항행에 사용할 때 ○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5년)이 만료된 때	
중간검사	○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사이 ※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은 면제	
임시검사	○ 어선의 시설을 개조·수리할 때 ○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할 때	
특별검사	○ 임시로 어선을 어선법에서 정한 용도 이외에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때	
임시항행검사	○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어선을 임시로 항행에 사용하고자 할 때	

다. 어선검사 신청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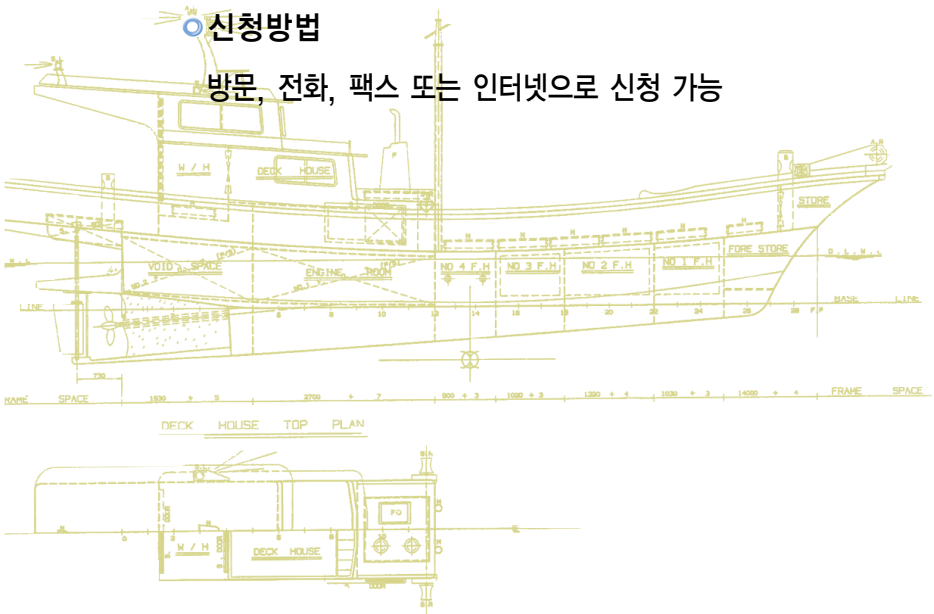
(어선법 시행규칙 제43조부터 제55조까지 참조)

- **검사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선급

- **구비서류**
  - 어선검사신청서
  -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선박수입으로 임시항행검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임시선박국적증서)
  - 어선검사증서(최초의 정기검사 시는 제외)
  - 도면 등 해당 어선검사에 관한 서류

- **신청방법**

  방문,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3.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수상레저안전법)

가.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어떤 레저기구인가요?

- **안전검사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
  - **수상오토바이**
    → 추진마력, 크기 제한 없음
  - **모터보트(총톤수 20톤 미만)**
  - **고무보트**
    →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제외)



수상오토바이



총톤수 20톤 미만 모터보트



고무보트(30마력 이상)

나. 수상레저기구의 검사종류별 검사시기 및 신청기관은?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구 분	검사 시기	신청 기관
신규검사	○ 최초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할 때	검사대행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 (사)한국수상레저 안전연합회)
정기검사	○ 개인 : 안전검사증서의 유효기간 (5년)이 만료된 때 ○ 사업자 : 안전검사증서의 유효기간 (1년)이 만료된 때	
임시검사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때	

다. 안전검사 신청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

- **검사기관** :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 **구비서류**
  - 안전검사신청서
  - 검사대상장비명세서
  - 검사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면제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신청방법**

  방문,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